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외 가입자식별모듈(SIM)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 신설〉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85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외 가입자식별모듈(SIM) 판매 시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정보의 표시 의무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7. 1.

다. 회부연월일 : 2026.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 내받고 있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경유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2, 제32조의23,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99조).

Ⅲ. 검토의견

1. 국외 가입자식별모듈(SIM) 판매 시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정보의 표시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가입자식별모듈(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정의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가 국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식별모듈(이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라 함)을 판매하려는 경우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21의2, 제32조의23, 제50조 제1항제5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1. (현행과 같음) <u>21의2. “가입자식별모듈”이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자를 식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되어</u>

현행	개정안
22. ~ 29. (생략) 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있는 장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내려받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 ~ 29.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3(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정보의 표시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3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는 국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식별모듈(이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국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 2.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시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현행	개정안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	----- -----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 -----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거나 판매자등이 제32조의23제1항을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현행	개정안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 다)를 한 자 7.·8. (생략)	-----행위,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 7.·8.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 가입자식별모 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해외 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제 로밍 서비스 외에 온라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USIM)이나 이심(eSIM)과 같은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런데, 국내 가입자식별모듈의 경우 이용자가 어떠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나, 온라인 판매자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의 경우 상품 화면에 ‘유럽 30개국 사용’, ‘일본 현지망’ 등의 정보만 표시될 뿐,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사용하게 되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합리

적인 가입자식별모듈 선택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 여행용 유심 또는 이심은 가격이나 제공 데이터양이 같더라도 데이터 처리 구조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이용자가 유럽에서 유심·이심을 사용하여 현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가 인근 국가가 아닌 아시아에 위치한 경우 데이터 왕복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서비스 속도·품질 등의 저하를 겪을 수 있으며, 여행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유심·이심을 구매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유심·이심이 인근의 다른 국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²⁾하고, 명의로용방지 서비스의 제공,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최적요금제의 고

1) 2026. 8. 28. 한국경제, 베트남 여행 간다고 '이심' 샀는데...핸드폰 켜자마자 '날벼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89689g>)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가입자식별모듈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가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려는 경우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영자의 명칭 및 국가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현행 제도상 공백을 해소하고,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에 관한 허위·과장 마케팅을 방지함으로써 해외여행 중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하려는 자의 서비스 비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벌칙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이용약관과 상이한 서비스 제공,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³⁾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생시키는 유형의 금지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제재수단인 벌칙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를 표시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U+)는 해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시에도 국내 가입자식별모듈을 그대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재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판매점 역시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에 관한 사항은 위탁·재위탁받지 않아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실제 판매자와 수범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표시의무의 주체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의 표시의무 이행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부분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은 글로벌 로밍 사업자가 여러 국가의 이동통신사업자와 로밍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용자의 위치, 시점, 트래픽 상황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결정되므로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가 사전에 이를 확정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표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동의

- 가입자식별모듈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통상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중소 사업자는 최종 상품을 수입·유통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구매 계약 단계에서 망 구조 및 라우팅 세부 정보까지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의무는 계약 및 기술 측면에서 확인 및 이행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동의

- 가입자식별모듈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국외를 방문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구매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주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은 실제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규제가 산업과 이용자 비용 부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이동통신사업자(SKT·KT·LGU+): 수정동의

- 이동통신사업자는 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국외에서 제3국 로밍으로 사용가능한 가입자식별모듈 등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개정안 제32조의23제1항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로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신중검토

-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밍형 상품의 특성상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표시가 불가능하여 개정안에 따른 표시의무 준수가 어렵고, 규제 도입으로 저렴한 로밍형 상품 판매가 퇴출될 경우 이용자 부담 가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25